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323호 정선군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정선군 조례 제2324호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정선군 조례 제2325호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16
- 정선군 조례 제2326호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23
- 정선군 조례 제2327호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26
- 정선군 조례 제2328호 정선군 화암관광지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31
- 정선군 조례 제2329호 정선군 탄광지역생활현장보존·복원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 39
- 정선군 조례 제2330호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43
- 정선군 조례 제2331호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48
- 정선군 조례 제2332호_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51
- 정선군 조례 제2333호_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71
- 정선군 조례 제2334호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112
- 정선군 조례 제2335호 정선군 주식회사 아리힐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115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208호 정선군 반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118
- 정선군 규칙 제1209호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149
- 정선군 규칙 제1210호_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시행규칙 153
- 정선군 규칙 제1211호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170

조 례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 3. 12.

정선군 조례 제2323호

정선군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상징물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상징물조례”를 “정선군 상징물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를 “정선군”으로 한다.

제2조 중 ““상징물”이라 함은”을 ““상징물”이란”으로 하고, “군”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 선 군 심 별 마 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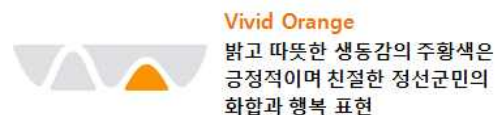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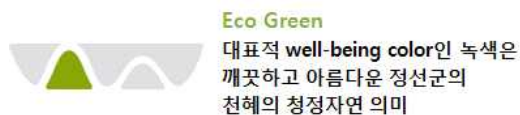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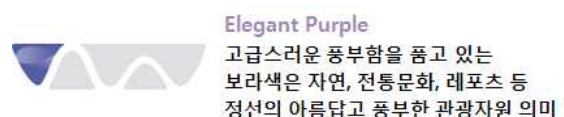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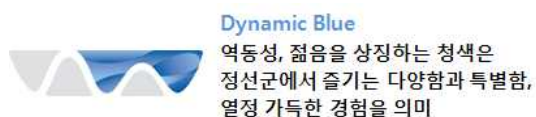
1. 심 별 마 크



2. 총 설

전통 질그릇 형태 속에 정선군을 상징하는 주요 요소가 심장박동 리듬에 맞추듯 담겨있는 형상을 통해 ‘가슴 뛰는 정선을 담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정선군의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관광자원, 사람과 열정이 한데 모여 가슴 뛰고 희망찬 정선을 만든다는 의지를 표현한다.

3. 부분별 해설



4. 작도 방법

가. 심벌마크의 재생은 원칙적으로 정선군 CI 디자인편람집에 제시된 각 항목별 규정과 매뉴얼에 제시된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본형과 응용형을 정확하게 표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금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나. 전용색상

○ 주색/보조색_별색활용

- JS Blue : PANTONE 292C
- JS Deep : Blue : PANTONE 286C
- JS Purple : PANTONE 2725C
- JS Light Gray : PANTONE Process Gray K:70
- JS Black : PANTONE Process Black K:100
- JS Green : PANTONE 377C
- JS Orange : PANTONE 152C
- JS Gray : PANTONE Process Gray K:85
- JS Gold : PANTONE 873C
- JS Silver : PANTONE 877C

○ 4원색

- JS Blue : C45%+M10%+R149%+G200%+B232%
- JS Deep Blue : C90%+M60%+G97%+B169%
- JS Purple : C70%+M60%+R97%+G106%+B171%
- JS Light Gray : K70%+R112%+G113%+B115%
- JS Black : K100%+R26%+G23%+B27%
- JS Green : C60%+M20%+Y100%+R124%+G158%+B34%
- JS Orange : M50%+Y100%+R242%+G148%
- JS Gray : K85%+R75%+G75%+B77%
- JS Gold : C30%+M30%+Y60%+K10%+R179%+G160%+B108%
- JS Silver : K40%+R177%+G178%+B180%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 상징물조례</u>	<u>정선군 상징물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u> 의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정선군</u>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 <u>상징물</u> ”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마스코트, 각종 상표, 동물, 식물, 브랜드슬로건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u>상징물</u> ”이라 함은 <u>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u> ----- - - - - - -----.

개 정 이 유

- 1990년대 말 개발하여 그동안 사용해 온 정선군 CI를 21C 시대적 흐름과 2018동계 올림픽 개최 도시에 걸맞는 CI로 리브랜딩이 완료 되었기에 별표 1의 기존 정선군 CI를 새로운 CI로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 상징물 조례 별표 1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별표 1)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 3. 12.

정선군 조례 제2324호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를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로 하고,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를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작업장”을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예산리 432-309번지”를 “녹송2길 50”으로 한다.

제3조 중 ““장애인”이라 함은”을 ““장애인”이란”으로 하고, “법”을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고용대상 및 선정순위) ①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중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재가 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제1항 중 장애인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수탁자가 결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급수가 높은 자

3. 기타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작업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에서 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3. 작업장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력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②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수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에서 수탁운영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6조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 중 제5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제12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0조”로 하며,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수탁 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을 위탁운영 관리할 때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 간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 체결하여야 하며,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기간) ①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위탁취소사유 발생 등 계속 위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3년의 기간 단위로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

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재위탁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탁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장애인 및 직원 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시설 운영개선에 재투자 할 수 있으며, 작업장 고용장애인 및 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고용장애인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제13조제2항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5. 제10조제5항의 시설물의 신·증·개축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관계법규 및 준수) 수탁자는 작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법 및 사회복지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7조제4항 관련)

위탁운영신청서				
신청인	법인 및 단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회원수 또는 수용인원	
	설립일			
신청사항	운영목적			
	운영(갱신)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요사업내용			
자산상황				
연간예산액(천원)	계	운영주체부담금	보조금	기타
기타사항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위탁운영결정통지서(제7조제4항 관련)

법인 및 단체명				
법인 및 단체소재지				
대 표 자				
섭 립 일 자				
주요사업내용				
자 본 금				
연 간 예 산 액 (천 원)	계	자부담	보조금	기 타
결 정 사 유				
특 기 사 항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u>	<u>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u> 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u>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u> 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장애인복지법</u> 」 <u>제59조</u> ----- ----- ----- <u>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u> ----- ----- ----- ----- ----- -----.
제2조(위치) <u>작업장</u> 은 정선군 정선읍 <u>애산리 432-309번지</u> 에 둔다.	제2조(위치) <u>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u> ----- <u>녹송2길 50</u>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 <u>장애인</u> ”이라 함은 <u>법</u>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의) -----“ <u>장애인</u> ”이란 「 <u>장애인복지법</u> 」 (이하 “ <u>법</u> ”이라 한다) -----.
제5조(이용대상) <u>작업장</u> 의 이용대상은 <u>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u>	제5조(고용대상 및 선정순위) ① <u>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u> 은 <u>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u> 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중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재가 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제1항 중 장애인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수탁자가 결정한다. 1. <u>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u> 2. <u>장애급수가 높은 자</u> 3. <u>기타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현행	개정안
제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선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작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시에는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작업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에서 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3. 작업장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력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②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수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에서 수탁운영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위·수탁 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을 위탁운영 관리할 때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 간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 체결하여야 하며,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8조(수탁자의 의무)</u> ① ~ ④ (생략) ⑤ 시설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전화료 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군에서 군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동 지번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u>제9조(관리감독)</u>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u>제9조(위탁기간)</u>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u>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위탁 취소사유 발생 등 계속 위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3년의 기간 단위로 재위탁 할 수 있다.</u>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재위탁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탁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u>제10조(수탁자의 의무)</u> ① ~ 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⑤ 수탁자는 동 지번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u>제11조(관리감독)</u> ① - - - - - ----- ----- ----- ----- -----.

현행	개정안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u>제10조(위탁의 취소)</u>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u>제8조</u>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집기 등은 모두 군에 귀속된다. <u>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 <신 설>	② ----- ----- ----- -----. <u>제12조(위탁의 취소)</u> ①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1. ----- <u>제10조</u>----- 2. ----- 3. ----- 4. -----. 5. ----- ② ----- ----- <삭 제> <u>제13조(수익금의 사용)</u>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장애인 및 직원 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한다. ② <u>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시설 운영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작업장 고용장애인 및 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4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 <u>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u> <u>2. 고용장애인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u> <u>3. 작업장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u> <u>4. 제13조제2항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u> <u>5. 제10조제5항의 시설물의 신·증·개축에 관한 사항</u> <u>6.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u>
<u><신 설></u>	<u>제15조(관계법규 및 준수) 수탁자는 작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법 및 사회복지사업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u>
<u>제12조</u>(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호 정한다.	<u>제16조</u>(시행규칙) -----.

개 정 이 유

-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작업장 고용대상 및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 작업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 작업장 위·수탁 협약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 작업장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 규정(제9조)
- 작업장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제13조)
- 수탁자의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규정(제14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 3. 12.

정선군 조례 제2325호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이장정수조례”를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의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읍 면	리 명	이장 정수	분구리명	구 역
계		182		
정선읍	봉양리	10	봉양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8리 9리 10리	상동 일부(시장) 정선군법원, 삼우주택, 정선농협 부근 중동 하동 녹도 일부 관음, 생탄, 세대, 동곡 상동 일부, 적거리 녹도 일부 녹도 일부 봉양주공아파트, 보건소, 소방서 일원
	북실리	5	북실1리 2리 3리 4리 5리	용담, 계봉, 병방치 마미곡, 개간제, 오암, 부곡, 간곡 군부대, 아리랑아파트 일대 사내(미천) 미소빌아파트, 현대아파트
	덕송리	2	덕송1리 2리	석교동, 납덕동, 내반점, 외반점 월천, 송오
	애산리	5	애산1리 2리 3리 4리 5리	병방, 어촌, 신촌 역전 일부 오반 구미, 이절, 개골 역전 일부
	신월리	2	신월1리 2리	와평, 드름터 월통, 신치, 어치
	덕우리	1	덕우리	덕산기, 대촌, 삼거리, 유천, 거어리
	여탄리	1	여탄리	옛둔, 화작동, 중북동, 본동
	회동리	2	회동1리 2리	월평, 사택 본동, 세곡, 양지마을, 마항(말목)
	용탄리	3	용탄1리 2리 3리	내촌, 곡구, 실론, 비룡동, 노미, 이평, 세곡 벽탄, 월평 기곡, 점촌, 행마
	광하리	2	광하1리 2리	광석, 군언, 상평, 송단, 모평, 선곡 망하, 여곡, 소탄, 마전
	굴암리	1	굴암리	상굴암, 본동, 하굴암, 의암, 월포, 동무지, 만지산, 옷바우
	가수리	1	가수리	수매, 북대, 가탄, 해매

고한읍	고한리	20	고한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8리 9리 10리 11리 12리 13리 14리 15리 16리 17리 18리 19리 20리	만항, 평화촌 두문동 일부 두문동 일부, 소두문동 박심리, 삼봉 상갈래 일부, 절골 중갈래 일부, 중앙아파트, 새마을사택 중갈래 일부, 진골 고한주공아파트, 강원랜드다목적숙소 일원 당목, 대원아파트 일원 시장 일부 막골, 신사택 구 읍사무소 일원 북부사택, 홀아비골 고토일 부금소, 목골, 진밭골 물한이골 양지마을 하갈래 시장 일부 정선군임대아파트, 해피아리아파트 일원
사북읍	직전리	1	직전리	무널, 피내, 주막거리, 발전
	사북리	12	사북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8리 9리 10리 11리 12리	범바위 사북아파트, 선명1차 아파트 일원 시내 아랫사북, 구 중앙사택 일원 골말, 화절령, 구)동원아파트 일원 도사곡 웃사북 일부, 소잡느골 중앙시장 일원 선명오피스텔, 선명소라파크 일원 웃사북 일부 북일 산수빌아파트 일원
신동읍	예미리	7	예미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본동, 의림길 유문동 용거리, 수해민주택 일원 재건촌 노일 일부, 용주골 노일 일부, 역전 납돌
	천포리	1	천포리	예미산, 내곡, 곡길, 본동, 양지마을
	조동리	9	조동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8리 9리	절골, 장미연립 일원 안길운 개미촌, 구룡동 시장 일원 함백초등학교 일원 새골 수해민주택 일원 안경다리 함백종고 일원

신동읍	방제리	2	방제1리 2리	매화동, 장재터, 원방제, 미륵골, 둔박골, 덕세 새비재, 설령, 전락촌 새비재, 설령, 전락촌
	가사리	1	가사리	원가사, 남애, 두리골, 황장골, 마차재
	고성리	2	고성1리 2리	평구, 수촌, 고림 내창, 병산, 고방, 신진
	덕천리	1	덕천리	원덕천, 소골, 제장, 연포, 바세, 구포
	운치리	3	운치1리 2리 3리	돈이치, 텃골, 터일, 기곡 수동, 번평, 고재벌 납운돌, 점재, 설론
화암면	화암리	4	화암1리 2리 3리 4리	그림바위, 웃그림바위, 구슬동(큰·작은 구슬동) 미천, 천포, 멧둔지, 싸내 오산, 좌사(양지·음지) 화표동, 큰터, 후원이, 절골
	석곡리	2	석곡1리 2리	억실, 뒤뜰, 수류골, 마덕, 덕거리 상석항, 하석항, बे지름골
	북동리	1	북동리	상북동, 하북동, 월애골, 함바위, 뒷골
	몰운리	2	몰운1리 2리	한치, 되기 몰운, 제동(윗·아랫제동)
	건천리	1	건천리	본동, 큰골, 소일, 송이골
	호촌리	1	호촌리	풍촌, 호명, 어우실
	백전리	2	백전1리 2리	서원기, 정승골, 대지산, 합수거리 노나무골, 한소리, 마당목
남 면	문곡리	3	문곡1리 2리 3리	별어실, 본동(시내), 무른당 탐거리, 점촌, 중간마을, 골말, 상사골, 마차재 자미원, 수리재, 오지구
	무릉리	5	무릉1리 2리 3리 4리 5리	멀미 내자고치, 안자고치, 싸리실, 능전, 덕만, 발구덕 삼거리, 척산 증산(역전) 묵산, 정직간
	유평리	2	유평1리 2리	젯마을, 소마평, 아산미, 제기실, 새마을, 매기돌, 능바위, 양지마을 오름실, 삼내, 고일, 버드내, 한치
	낙동리	3	낙동1리 2리 3리	거철현, 전개, 수발, 노름골, 창말 괌들, 양지마을, 음지마을, 벳둔, 문두골, 의평 음달(역전), 샘뜰, 선평
	광덕리	2	광덕1리 2리	수령, 영곡, 광방, 화암, 채운, 석대, 수와우 광탄, 삼중, 송오리, 역전, 갈금, 범소, 서마루
여량면	여량리	5	여량1리 2리 3리 4리 5리	본동 일부, 노고마니, 하곡, 절골 본동 일부 본동 일부, 마산치 본동 일부, 고음동 가금동
	유천리	3	유천1리 2리 3리	송천, 진평, 싸리골 지경, 양지마을, 외봉정 마평, 궁대, 궤재, 하가재
	구절리	3	구절1리 2리 3리	중동 일부, 하절구, 자개, 떡갈밭 양지마을, 절골, 중앙동 중동 일부, 사달

여량면	남곡리	1	남곡리	고사리, 앞시골, 되골, 북바위, 쇠골
	고양리	1	고양리	임지동, 수무골, 삼가, 큰골, 고창골
	봉정리	1	봉정리	본동, 새치, 발면
북평면	장열리	2	장열1리 2리	본동, 동하지, 바람부리 가평, 하남골
	북평리	6	북평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거무소, 본동(후평), 하동 붉은언덕, 석두 상동 일부 하동 항골, 강선암, 노루목, 아창골, 차랑골, 용소골, 먹골, 약물골 상동 일부
	남평리	2	남평1리 2리	용바우, 오음동, 신촌, 새마을, 장승백이 다실동, 한대동, 봉화치, 새리골(새을골), 바드란이, 복지골
	문곡리	1	문곡리	본동, 큰골, 적은골, 스므골, 백운동
	나전리	2	나전1리 2리	본동, 야미(배미), 어나전(어뢰), 어도원, 할미골, 명지내, 미루니, 윗터골 장평, 다래골, 세미골, 졸평
	숙암리	1	숙암리	우면주(본동), 대지(큰터), 빗발, 단임, 높은터, 깊은터, 메밀굽이, 소나무터, 장재터, 오장동, 우동 골, 절골
	가목리	1	가목리	군대, 가목, 명주목이, 부스베리
임계면	도전리	2	도전1리 2리	외도전 내도전, 너래골, 기추목이, 장아리, 아우라지, 사시내골, 매바위
	직원리	2	직원1리 2리	발땃, 군대 일부 구룡동, 노직동, 피원, 당두, 골말, 역마루
	임계리	4	임계1리 2리 3리 4리	점촌, 장성거리, 안검무일부, 관말, 귀새 태봉안, 골말, 도진이, 가슬비 화성, 금방동, 고내 명소, 평양말, 노루마당, 갈마동
	송계리	8	송계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8리	송원, 문동이골 골말 일부, 웅기장골, 공원묘지골 송계본동 일부 뒷말, 고독불 안검무 일부, 신현동(새버리), 골말 일부 송계본동 일부 송계본동 일부 소탄, 소메기골, 도수장골, 골말일부
	봉산리	3	봉산1리 2리 3리	송촌, 점구비, 장찬, 안산 본동, 바위안(암내동) 등봉골, 말루, 구미
	낙천리	3	낙천1리 2리 3리	역평, 광산골, 석동거리, 늪밭골, 탑거리, 오목골 일부 미락, 발미락, 사을기 혈천, 오누골
	용산리	2	용산1리 2리	월탄, 햇골, 오목골 일부, 세류골, 명당바위 용동, 돈들(전평), 범정골
	문래리	3	문래1리 2리 3리	양지, 골지본동, 마태골 하동, 감마동 음지마을, 석둔, 세루골, 장터거리

임계면	덕암리	1	덕암리	작은소래, 큰소래, 새이말, 벳둔골, 구룡동, 무널골, 동무지, 삼베일, 버실이, 위밀이골, 송이재, 장강촌, 공전리
	고양리	1	고양리	적목동, 새이말, 덕치, 수기동, 하승두, 상승두, 고수말이, 하일, 소라곡, 절골, 다래재, 손오거리
	반천리	2	반천1리 2리	성북, 노일, 도장골 일부, 산성, 여우새, 어전, 월루, 덕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이장정수조례</u> 제2조(<u>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u>) <u>리장</u>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u>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u> 제2조(<u>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u>) <u>이장</u> -----.

개 정 이 유

- 폐광지역 인구감소 및 아파트 신축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특정지역 인구집중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읍면 행정의 원활한 지원과 행정능률성 극대화를 위하여 사북읍 행정리 조정에 따른 이장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리 조정

구 분	현 재	조정내용				증.감	조정 후	비고
		신설	통합	분할	폐지			
합 계	182						182	
정선읍	35						35	
고한읍	20						20	
사북읍	13	2	△2			-	13	
신동읍	26						26	
화암면	13						13	
남 면	15						15	
여량면	14						14	
북평면	14						14	
임계면	32						32	

- 기존 이장정수 182명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일부 행정리가 통합, 신설됨에 따라 이장의 관할 구역 조정(별표)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 3. 12.

정선군 조례 제2326호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정선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협의회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방위업무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u> 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회 업무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정선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협의회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방위업무담당으로 한다.
<u>제6조</u>(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제7조</u>(시행규칙) -----.

개 정 이 유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6조)
 - － 실무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
 - － 실무위원회 심의사항
 -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 3. 12.

정선군 조례 제2327호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 범위 이상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사태 등 산림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의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 정선군민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등 산지활용계획과 산사태취약지역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및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4.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⑥ 위원이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 결과의 추진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7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8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사)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 규정에 따라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인원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제2조)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정함(제3조)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요건 및 심의대상 등을 정함(제4조)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의 의무, 회의진행, 의견청취, 상정안건 심의, 회의록 작성, 현지조사, 서면심의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제5조~제11조)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간사의 역할을 정함(제12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 3. 12.

정선군 조례 제2328호

정선군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4조”를 “제67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병장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병장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4. “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대학생, 병장 이하의 군인과 의무·전투경찰은 제외한다.
5. “단체”란 30명 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관람료”란 관광지를 입장하는 자와 동굴을 탐방하기 위하여 동굴내를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란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7조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요금의 반환) ① 이미 납입한 사용료 및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제8조의 제한으로 인한 반환사유 발생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한 경우

②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을 취소한 경우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국내 숙박여행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3조의2(자체운영규정)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 범위 내에서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화암관광지			야영장		캠핑캐라반 (신설)		모노레일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노지 사용료	데크 사용료	3~4인용	6~7인용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일반	개인	5,000	3,500	2,000	6,000	10,000	• 성수기 80,000 • 비수기 - 주말·공휴일 60,000 - 평일 50,000	• 성수기 100,000 • 비수기 - 주말·공휴일 70,000 - 평일 60,000	2,000	1,500	1,000
	단체	4,500	3,000	1,500							
군인	개인	3,500	2,500	1,000							
	단체	3,000	2,000	800							
투표자	개인	3,000	2,000	800							
	단체	2,500	1,500	500							

※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중복감면은 불가함.

※ 성수기 : 7월 ~ 8월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주말 적용일은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임

【별지 제1호서식】

화암관광지 관람권

(앞면)

관람권 ADMISSION TICKET	본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1회 사용가능 합니다.	화암관광지 Hwa-am tourist resort
일련번호 :	절 취 선 동굴 전경사진	일련번호 :
발행 내역		발행일자 :
발행일자 :		발행 내역
합계금액 :		합계금액 :
		정선군 로고

(뒷면)

금과 대자연의 만남! 환상의 금광테마동굴	
화암동굴은 1992년부터 1945년까지 금을 캐던 천포광산(泉浦鑛山)으로 당시 연간 순금 22,904g을 생산하는 국내 5위의 금광이었다. 이 동굴은 당시 굴진작업 중 발견한 천연동굴과 금을 캐던 폐 갱도를 추가 개발하여 공개한 테마동굴로서 금광개발에 따른 역사성과 2,800㎡의 자연동굴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굴의 총연장은 1,803m이다. 이 동굴은 역사의 장(16개 Zone), 금맥따라 365, 동화의 나라(11개 Zone) 금의세계(13개 Zone), 대자연의 신비(자연동굴)로 5개장 41개 Zone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천연동굴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국내 최초의 테마동굴이다. 화암동굴은 강원도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되어 있다. 《안내 및 문의》 •전화 : •홈페이지 :	

시설이용권(야영권)

(앞면)

야영권 ADMISSION TICKET	본 야영권은 당일에 한하여 1회 사용가능 합니다.	화암관광지 Hwa-am tourist resort
일련번호 :	절 취 선 전경사진	일련번호 :
발행 내역		발행일자 :
발행일자 :		발행 내역
합계금액 :		합계금액 :
		정선군 로고

(뒷면)

주변관광지 안내	
● 화암8경 - 제1경(화암약수), 제2경(거북바위), 제3경(용마소), 제4경(화암동굴), 제5경(화표주), 제6경(소금강), 제7경(물운대), 제8경(광대곡) ● 등산코스 - 화암약수 → 소금강 → 물운대 (3시간 소요) - 물운대 → 광대곡 (왕복 2시간) - 화암약수 → 불암사 → 구슬동 → 지역산 → 민동산 → 증산 (6시간 소요) - 화암약수 → 지역산 → 삼내약수(4시간 30분 소요) 《안내 및 문의》 •전화 : •홈페이지 :	

시설이용권(캐라반)

(앞면)

이 용 권 ADMISSION TICKET	본 이용권은 당일에 한하여 1회 사용가능 합니다.	화암관광지 Hwa-am tourist resort
일련번호 : 발행 행 내 역 발행일자 : 합계금액 :	캐라반 전경사진	일련번호 : 발행일자 : 발행 행 내 역 합계금액 : 정선군 로고

(뒷면)

주변관광지 안내	
● 화암8경 - 제1경(화암약수), 제2경(거북바위), 제3경(용마소), 제4경(화암동굴), 제5경(화표주), 제6경(소금강), 제7경(물운대), 제8경(광대곡) ● 등산코스 - 화암약수 → 소금강 → 물운대 (3시간 소요) - 물운대 → 광대곡 (왕복 2시간) - 화암약수 → 불암사 → 구슬동 → 지역산 → 민동산 → 증산 (6시간 소요) - 화암약수 → 지역산 → 삼내약수(4시간 30분 소요) 《안내 및 문의》 •전화 : •홈페이지 :	

시설이용권(모노레일 승차권)

(앞면)

모노레일승차권 BOARDING TICKET	본 승차권은 당일에 한하여 1회 사용가능 합니다. 화암동굴 관람은 별도 관람권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화암관광지 Hwa-am tourist resort
일련번호 : 발행 행 내 역 발행일자 : 합계금액 :	모노레일카 전경사진	일련번호 : 발행일자 : 발행 행 내 역 합계금액 : 정선군 로고

(뒷면)

정선 화암동굴의 신비로운 세계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800㎡에 달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대광장으로 이루어진 천연동굴이 함께하는 화암동굴에는 동양최대를 자랑하는 높이 28m의 황종유벽과 대석순, 대석주, 마치 빗어놓은 듯한 마리아상, 부처상, 장군석, 그리고 지금도 자라고 있는 석순, 석화, 곡석등 동굴 생성물들이 가득하여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석회석 동굴이며 또한, 금과 대자연, 동화속의 금개비, 은개비가 함께 어우러지는 국내최초의 테마형 동굴로서 5개장과 41개 ZONE으로 구성된 1,803㎡관람구간을 통하여 새롭고 다채로운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문의》

- 전 화 :
- 홈페이지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관광지 및 화암동굴의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67조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병장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20세이상 64세이하의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병장 이하의 군인과 의무·전투경찰은 제외한다. 5. “단체”라 함은 30인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노인”이라 함은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7. “관람료”라 함은 관광지를 입장하는 자와 동굴을 탐방하기 위하여 동굴내를 입장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병장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4. “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병장 이하의 군인과 의무·전투경찰은 제외한다. 5. “단체”란 30인 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관람료”란 관광지를 입장하는 자와 동굴을 탐방하기 위하여 동굴 내를 입장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란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제7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다음 <u>각 호의 1</u>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11. (생략)	제7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 1. ~ 11. (현행과 같음)
제8조(관람의 제한) 다음 <u>각호의1</u> 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8조(관람의 제한)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요금의 반환) 이미 납입한 입장료 및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의 제한으로 인한 반환사유 발생과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요금의 반환) ① 이미 납입한 사용료 및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의 제한으로 인한 반환사유 발생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한 경우 ②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을 취소한 경우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국내 숙박여행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신설>	제13조의2(자체운영규정)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 범위 내에서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 정 이 유

- 다양한 국민관광 수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선군 화암관광지 내 캠핑캐라반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을 취소한 경우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국내 숙박여행에 관한 조항을 준용(제9조)
- 캠핑캐라반 시설사용료 신설(별표 1)
 - － 3~4인용: 성수기 80,000원, 비수기(주말·공휴일: 60,000원, 평일: 50,000원)
 - － 6~7인용: 성수기 100,000원, 비수기(주말·공휴일: 70,000원, 평일: 60,000원)
-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조례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제13조의2)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 3. 12.

정선군 조례 제2329호

정선군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시설(이하 “보존·복원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보존·복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삼탄광산 아트밸리: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2.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3-25번지 일원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존·복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및 마을단체(개발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존·복원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한 사업능력,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협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위탁운영실적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협약에 의한 성실한 업무수행 여부를 검토하여 협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재협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보존·복원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받은 보존·복원시설의 시설·장비·기타재산 및 지원받은 비용을 수탁목적 및 지원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탁협약사항에 의한 군수의 명령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의 변경(증·개축을 포함한다) 또는 장비 등을 보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협약 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
 3. 수탁자가 수탁관리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4. 군수가 공익상 시설물을 위탁관리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군수는 보존·복원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별도 기준에 의하여 징수 및 감면할 수 있으며, 기준은 자체운영규정에 의한다.

② 보존·복원시설 자체운영규정을 수탁자가 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복원시설 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유류 등 화재위험물질을 소지한 사람

3. 시설의 훼손 또는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기타 군수가 입장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동절기 등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존·복원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관리비용의 충당) ① 보존·복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제9조의 사용료 등의 수입, 수탁자의 사업수익 및 자부담으로 충당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재원으로 관리비용의 충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군수는 수탁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보존·복원시설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한 사람은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과 이 조례 범위에서 별도 운영규정(시설사용료 포함)을 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보존·복원시설의 위탁관리 및 행정재산 등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고한읍 고한리와 신동읍 조동리에 조성하는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 규정(제3조)
- 보존·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 규정(제4조)
- 수탁자의 의무 및 취소사항 규정(제6조~제7조)
- 수탁자의 운영사항 검사 및 조사사항 규정(제8조)
- 보존·복원시설의 사용료 등의 징수 규정 마련(제9조)
- 보존·복원시설의 관리비용의 충당 규정(제11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 3. 12.

정선군 조례 제2330호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관내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가·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기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유산 및 자료와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한다.
2. “향토유형문화유산”이란 건조물, 서적,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선사유적, 역사유적, 민속자료, 명승지, 동·식물자생지, 지형·지질 등 유형의 문화적 또는 자연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3. “향토무형문화유산”이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도록 정선군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관광문화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촉직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재 업무담당으로 한다.
- ⑧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하며, 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이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군수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7조(실비변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 또는 공무상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

②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공무원, 소유자, 관리자 등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향토문화유산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향토유형문화유산과,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③ 향토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기·예능을 원형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단체)를 보유자(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소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기준) 향토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지정한다.

- 1.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기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 2. 향토문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보존·관리가 필요한 문화유산
- 3. 지역적 특징이 뚜렷하여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문화유산

제11조(지정서 등 발급)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형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향토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게는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2조(지정의 해제)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 1. 향토문화유산이 국가·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경우
 - 2. 정선군 지정 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 3.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단체)로 지정된 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고시) ① 군수는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를 할 때 이를 고시해야 하며, 변경할 경우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재검토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고시해야 한다.

제14조(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문화유산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소유자가 불확실한 문화유산에 대해 소재지 읍·면장 또는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자를 별도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보존·관리)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관리자는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해야 한다.
2.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3.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점검)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점검과 기록유지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경비보조 등)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등 부득이한 때에는 당해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홍보 등)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내역과 취지를 주민에게 홍보해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문화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정선 관내에 소재하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상승시켜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제4조~제8조)
-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 규정(제9조~제13조)
-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제14조~제16조)
- 향토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경비보조 규정(제17조)
- 향토문화유산 홍보 및 유공자 표창 규정(제18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 3. 12.

정선군 조례 제2331호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선아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대행점”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계약하여 정선아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금융기관 및 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물품의 대가로 받을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한 업소 또는 상인을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품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맹점지정, 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대금지급 등 상품권에 관한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판매대행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등)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액 및 발행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상품권을 도난 또는 분실하였거나 훼손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상품권에 대하여는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취소) ① 군수는 관내 금융기관 등이 상품권 판매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상품권 판매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판매대행점

지정시 계약을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가맹점의 지정 및 취소) ① 상품권 사용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가맹점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으로 지정받은 자가 상품권을 거부하거나 가맹점지정 시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가맹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대금의 지급) 군수는 가맹점이 상품권 대금을 청구할 경우 당해 상품권을 회수한 즉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이용자에 대한 포인트 금액 지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정선군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내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소상공인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품권을 발행 및 판매 할 수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판매대행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3조)
-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함(제5조)
- 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가맹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이용자에 대한 포인트 금액지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 3. 12.

정선군 조례 제2332호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장)”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 공동처리구역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2. “사업소장”이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책임자를 말한다.
3. “폐수관거”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기본 부과금을 말한다.
6. “계량기”란 오·폐수 배출 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 구역으로 한다.

제4조(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군수는 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④ 사업소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사업소장에게 할 수 있으며, 사업소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협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 3. 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 4.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장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제6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제6조에 따라 유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 또는 매립 이전에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중간 확인검사를 군수에게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완료검사 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군수는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내경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은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한다.
6. 시간 최대 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과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과 격차가 100밀리그램/리터 이상인 사업자(장)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장)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이어야 한다.

제10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 측정계 등의 설치)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군수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 ③ 사업자(장)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량계의 조정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같은 기기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 농도측정계, 수질측정계,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량계 등 장치는 제8조제4호에 따라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⑦ 군수는 사업자가 제6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제12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및 오염물질)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3조에 따른 배출기준에 따른다.

1.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2. 화학적산소요구량(COD)
3. 부유물질량(SS)
4. 총질소(T-N)
5. 총인(T-P)
6.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10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

제13조(배출허용기준) 폐수 등 배출 사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인 경우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수질은 설계기준(별표 1) 이내로 배출하여야 하며, 설계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기능이 상실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률 제32조에 따라 폐수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2. 제33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

제3장 유지관리비의 부담

제15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사업자는 오·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 군수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실적자료에 따라 매 1년마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수정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공공요금, 약품구입비, 슬러지처리비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① 군수는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부과하되 당해 월의 유지관리비를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매월 25일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휴업, 비정상 가동 시 비용부담) 휴업 또는 일시 가동정지로 비정상 가동된 사업자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유지관리비 비용부담은 비정상 가동직전 3개월간의 실적 평균치의 기본요금과 인건비만 계상된 처리요금으로 산정한다.

1. 월간 폐수량으로 산정한 비용부담금이 비정상 가동 시 비용부담 방법에 따른 산출금액보다 적은 사업자
2. 휴업신고에 의하여 1월 이상 휴업한 오·폐수 배출업소

제18조(유지관리비 납부의무의 중단) 유지관리비 부담대상 사업장의 휴업,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오·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의 경우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오·폐수 배출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4장 기본부과금의 부담

제19조(기본부과금의 부담) 기본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및 제2호 외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제20조(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 ① 제19조에 따른 기본부과금은 군수가 원인을 분석한 후 입주기업 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본부과금의 산출기준은 제15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을 준용한다.

제5장 부담금의 관리·사용 및 징수유예

제21조(부담금의 사용) ① 유지관리비 및 기본부과금은 이를 징수한 처리시설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유지관리비는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22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등) ①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 달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 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비용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오·폐수량의 산정) ① 군수는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배출되는 오·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하도록 하되 폐수 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시점에서 실측한 평균치 결과로 산정한다.

②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량계 미설치업소 및 오수 배출업소는 군수가 용수 사용량,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추정·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 산정방식은 입주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산정한다.

③ 비용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는 오·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군수가 추정 산정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24조(부담금의 추정) 군수는 사업자가 제13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제기로 그 부담금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26조(가산금 및 증가산금)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7조(독촉 등)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되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28조(강제징수)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를 할 수 있다.

제29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 제품생산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권리의무의 승계) 처리구역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취득 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31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 및 제10조에 따른 유량계, 수소이온농도측정계 등 시설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군수는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폐수량의 산정방법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라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7장 입주기업 협의회

제34조(구성 및 운영) ① 예미농공단지의 원활한 운영과 주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

여 사업자로 구성되는 입주기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대표와 간사 각각 1명을 둔다.

③ 협의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3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관련 사항의 검토
2. 군수가 요청하는 안전에 대한 협의
3. 입주 기업체 간담회 등

제36조(의결)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의 부과에 사업자가 예미농공단지 공장용지 대비 70퍼센트 이상 입주시점까지 유예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이전에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사업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표 1]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수질
(제13조 관련)

제13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수질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mg/L)

수질항목	유입수질	비 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339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263	
부유물질량 (SS)	262	
총질소 (T-N)	41	
총 인 (T-P)	7	

[별표 2]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
(제15조 관련)

제16조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부담기준 : 부지면적과 오·폐수 배출량의 부하량에 따라 결정한다.
- 2) 산출근거

$$\bigcirc AS = 0.2M \frac{KI}{KT} + 0.8 M \frac{QOI}{QOT}$$

└기본요금┐ └처리요금┐

- AS : 업소별 부담금액

- M : 월간 유지관리비

직접경비 + 간접경비(직접경비의 10%) + 감가상각비

- KT : 전체 입주업소 부지면적

- KI : 개별 입주업체 부지면적

- QOT : 총 오·폐수 배출오염 부하량

· 폐수 : $\frac{BOD + COD}{2} + SS$

· 오수 : BOD + SS

- QOI : 개별업소 오·폐수 배출 오염 부하량

· 폐수 : $\frac{BOD + COD}{2} + SS$

· 오수 : BOD + SS

* 협의에 따라 폐수배출업체는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 협의에 따라 생활오수만 배출하는 업체는 인원수로 산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에미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주 생 산 품	
	착 공 예 정 일		준 공 예정일	
	건물면적(동별)		부 지 면 적	m ²
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mg/ℓ, COD : mg/ℓ, SS : mg/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정선군 에미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 하				
※ 구비서류	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별지 제2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예미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2.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3.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4.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5.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별지 제4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검 사 번 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서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납 부 고 지 서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				영 수 증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		영 수 필 통 지 서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	
금 액				금 액		금 액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업 체 명				업 체 명		업 체 명	
대 표 자				대 표 자		대 표 자	
납부기관	농협은행정선군지부			납부기관	농협은행정선군지부	납부기관	농협은행정선군지부
세입과목	특별회계(농공),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세입과목	특별회계(농공),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세입과목	특별회계(농공),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부 담 근 거				영수일자		영수일자	
수 량	B O D	C O D	S S				
m ³ /일	mg/ℓ	mg/ℓ	mg/ℓ				
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상환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정 선 군 수				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은행 정선군지부장		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협은행 정선군지부장 정 선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서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				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부담금의 종류	년 월분	금 액		금 액	기 간
		부담금	가산금		

※ 첨부서류

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1부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제 정 이 유

-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폐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사항을 규정함(제4조)
- 오·폐수 배출자의 배수설비 시설물의 설치·신고와 처리대상 오염물질 및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함(제6조~제13조)
- 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담·납부와 유지관리비의 예산지원을 규정함(제15조~제16조)
- 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 제공자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자에 대한 기본부과금 부담을 규정함(제19조)
- 부담금의 관리·사용 및 징수유예를 규정함(제21조~제22조)
- 부담금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와 독촉 및 강제징수 사항을 규정함(제26조~제28조)
- 폐수처리시설 관리와 관련한 입주기업 협의회 구성을 규정함(제34조)
-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과 유예를 규정함(부칙 제1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 3. 12.

정선군 조례 제2333호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선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 위원회(이하 “군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점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가. 당해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 다. 당해 지역의 군의회 의원
2.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

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군수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군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군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안의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 ③ 위원장은 군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④ 군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군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 · 내용 · 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 · 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 제출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25만원
- 3.1㎡ 이상 4.0㎡ 이하	3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0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0만원
- 6.1㎡ 이상 7.0㎡ 이하	60만원
- 7.1㎡ 이상 8.0㎡ 이하	70만원
- 8.1㎡ 이상 9.0㎡ 이하	8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0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0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2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4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6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80만원
4) 면적 20㎡ 이상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9만원을 더한 금액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25만원
- 3.1㎡ 이상 4.0㎡ 이하	3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0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0만원
- 6.1㎡ 이상 7.0㎡ 이하	60만원
- 7.1㎡ 이상 8.0㎡ 이하	70만원
- 8.1㎡ 이상 9.0㎡ 이하	8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0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0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2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4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6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8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9만 원을 더한 금액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 벌론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30만원
- 0.6㎡ 이상 1.0㎡ 이하	33만원
- 1.1㎡ 이상 2.0㎡ 이하	38만원
- 2.1㎡ 이상 3.0㎡ 미만	45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50만원
- 3.6㎡ 이상 4.0㎡ 이하	60만원
- 4.1㎡ 이상 4.5㎡ 이하	80만원
- 4.6㎡ 이상 5.0㎡ 미만	90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100만원
- 6.1㎡ 이상 7.0㎡ 이하	120만원
- 7.1㎡ 이상 8.0㎡ 이하	140만원
- 8.1㎡ 이상 9.0㎡ 이하	16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180만원
4)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9만 원을 더한 금액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 드벌론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 는 가로형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3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3만원
- 3.1㎡ 이상 4.0㎡ 이하	38만원
- 4.1㎡ 이상 5.0㎡ 미만	45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0만원
- 6.1㎡ 이상 7.0㎡ 이하	60만원
- 7.1㎡ 이상 8.0㎡ 이하	70만원
- 8.1㎡ 이상 9.0㎡ 이하	8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0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10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2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4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6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8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200만원
- 25.1㎡ 이상 30.0㎡ 이하	230만원
- 30.1㎡ 이상 35.0㎡ 이하	240만원
- 35.1㎡ 이상 40.0㎡ 이하	250만원
- 40.1㎡ 이상 45.0㎡ 이하	260만원
- 45.1㎡ 이상 50.0㎡ 미만	280만원
5) 연면적 50㎡ 이상	300만원 +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9 만원을 더한 금액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 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30만원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4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50만원
-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60만원

- 연면적 21㎡ 이상	60만원 +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3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5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7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30만원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4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50만원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60만원
- 연면적 21㎡ 이상	7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2) 교통안내소	가로형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 시승강장·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15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10만원
- 1.1㎡ 이상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미만	29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35만원
- 4.1㎡ 이상 5.0㎡ 미만	45만원
다) 연면적 5㎡ 이상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4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가로형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 등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2,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도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 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24,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1,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10,000원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 (개당)	3,000원
라. 공연간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3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12,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0,000원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2,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	

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4,5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3,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3,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3,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5,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하. 벽보(1건)	2,500원
거. 전단(1건)	2,500원
너.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종류의 광고물등 수수료의 2배 적용
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도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규정	-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별표 5]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과 태 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12만원
- 0.6㎡ 이상 0.8㎡ 이하		17만원
- 0.9㎡ 이상 1.0㎡ 미만		25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35만원
- 1.4㎡ 이상 1.6㎡ 이하		42만원
- 1.7㎡ 이상 2.0㎡ 미만		58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67만원
- 2.4㎡ 이상 2.6㎡ 이하		92만원
- 2.7㎡ 이상 3.0㎡ 미만		117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7만원
- 0.6㎡ 이상 0.8㎡ 이하		10만원
- 0.9㎡ 이상 1.0㎡ 미만		13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17만원
- 1.4㎡ 이상 1.6㎡ 이하		25만원
- 1.7㎡ 이상 2.0㎡ 미만		42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50만원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8만원
- 1.1㎡ 이상 2.0㎡ 이하		12만원
- 2.1㎡ 이상 3.0㎡ 미만		13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17만원
- 3.8㎡ 이상 4.4㎡ 이하		22만원
- 4.5㎡ 이상 5.0㎡ 미만		25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35만원
- 6.1㎡ 이상 8.0㎡ 이하		50만원
- 8.1㎡ 이상 10.0㎡ 미만		58만원
라) 면적 10㎡ 이상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2천원
- 21장 이상		장당 33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0천원
- 21장 이상		장당 37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17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제3조제1항 관련)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 등의 내용								관리자			⑮ 변 경 사 항	⑯ 비 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외광고물표시(변경)허가 번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⑯ 주 소	⑰ 전 화 번 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제22조제1항 관련)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시기간
. . . 까지
정선군수

○ 현수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제16조제3항 관련)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제16조제4항 관련)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

[별지 제5호서식](제16조제6항 관련)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	-----	-----	----	-----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정 선 군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자 격 기 한(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제17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 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성명

직위(직명)

(서명 또는 인)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제17조제1항 관련)

① 신청 번호	② 신청 일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 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 등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⑬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제19조제3항 관련)

① 일련 번호	② 광고물 종류	③ 표시 내용	④ 수량	⑤ 보관 연월일	⑥ 보관 장소	⑦ 위반장소 ·위치	⑧ 담당 (취급)자	⑨ 비고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제19조제4항 관련)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월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제21조제2항제1호 관련)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1조제2항제3호 및 제22조제5항 관련)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9조 및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제22조제5항 및 제23조제5항 관련)

[illegible]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제22조제7항 관련)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제23조제1항 관련)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제23조제2항 관련)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

개 정 이 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시설 규정(제6조)
- 자율관리 협정에 필요한 사항 규정(제7조)
-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제8조)
- 정비시범 구역의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제9조)
-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사항 규정(제11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 3. 12.

정선군 조례 제2334호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중 “5만원”을 “3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처분결정서(벌금, 과태료, 과징금 이상)”를 “처분결정서(벌금, 과태료, 과징금, 검찰청의 구약식처분 등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되, 당해 연도 신고된 것에 한하여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의 포상금은 신고인과 처분결과에 대한 연관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일자를 지급순서로 한다.
- ⑥ 동일인이 같은 차량을 일자를 달리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 신고하여 병합되어 처분된 경우 포상금의 지급은 1건으로 한다.
- ⑦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지급규모는 당해 연도 50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타인명의로 신고된 것이 확인될 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신고 및 포상)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타 지역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밤샘주차행위: 5만원 6. (생략)	제2조(신고 및 포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 ----- 3만원 6. (현행과 같음)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 ① ~ ② (생략) ③ 제2조제1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직접 고발하여 그 처분결정서(벌금, 과태료, 과징금 이상) 를 접수한 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처분결정서(벌금, 과태료, 과징금, 검찰청의 구약식처분 등 이상) ----- -----. ④ ----- ----- 지급하 되, 당해 연도 신고된 것에 한하여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월 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포상금은 신고인과 처분결과에 대한 연관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일자를 지급순서로 한다. ⑥ 동일인이 같은 차량을 일자를 달리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 신고하여 병합되어 처분된 경우 포상금의 지급은 1건으로 한다. ⑦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지급규모는 당해 연도 50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타인명의로 신고된 것이 확인될 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개 정 이 유

- 조례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운영의 실효성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포상금액의 조정(제2조)
 - 타 지역택시 밤샘주차 포상금액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함.
- 포상금액의 지급기준,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함(제6조)
 - 처분결정 인정범위에 검찰청의 구약식 처분을 인정함.
 - 지급순서를 청구순서로 하고, 1인이 동일차량을 같은 행위로 반복 신고한 경우 신고건수와 관계없이 지급은 1건으로 함.
 - 1인당 연간 신고건수를 50건으로 제한
 - 당해 연도에 신고하고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예산을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주식회사 아리힐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 3. 12.

정선군 조례 제2335호

정선군 주식회사 아리힐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및 제77조의3에 따라 「상법」 상 주식회사 아리힐스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법」 상 주식회사 아리힐스(이하 “회사”라 한다) 출자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되 군의 관할 구역에 둔다.

제4조(사업)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 병방산 군립공원 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로프웨이 운영사업
2. 친환경 펜션 운영사업
3. 통합 아이티(IT)시스템 관리사업
4. 군으로부터 인수받은 다음 각 목의 시설 관리·운영사업
 - 가. 스카이워크
 - 나. 짚와이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출자방법·한도)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사에 대한 출자를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액은 회사의 설립자본금 2분의 1 미만의 범위로 한다. 다만, 회사가 증자할 경우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를 할 수 있다.

③ 군이 처음 출자한 금액 외의 출자로 자본금의 지분이 변경될 경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주주권 행사 등) ① 군이 소유한 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가 행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 중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관계공무원이 대행한다.

② 군수는 회사의 이익배당금을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또는 다시 적립하거나 증자할 경우 그 자금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7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회사의 경영상황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받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 및 경영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검사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사채 발행 및 상환 보증) 군수는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외국차관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군의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

제10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소속공무원의 파견·겸임) 군수는 회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과 처분에 따른 재정지출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출자와 상계할 수 있다.

제 정 이 유

- 정선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및 제77조의3에 따라 「상법」 상 주식회사 아리힐스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상법」 상 주식회사 아리힐스 출자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그 범위를 정함(제2조)
- 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 출자방법·한도, 주주권 행사, 이익배당금의 조치, 사업연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제7조)
- 회사에 대한 지원, 지도·감독, 사채발행 및 상환 보증, 권한의 위탁, 소속공무원의 파견·겸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제11조)
-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출자준비 또는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과 처분에 따른 재정지출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출자와 상계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규정함(부칙 제2조)

조 례

정선군 반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 3. 12.

정선군 규칙 제1208호

정선군 반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반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선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명 칭			구 역		
정선읍	봉양 1리	제 1반	봉양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	"	제 12반	
	"	제 13반	"	제 13반	
	"	제 14반	"	제 14반	
	"	제 15반	"	제 15반	
	봉양 2리	제 1반	봉양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	"	제 12반	
	"	제 13반	"	제 13반	
	봉양 3리	제 1반	봉양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명 칭			구 역		
정선읍	봉양 3리	제 6반	봉양 3리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	"	제 12반	
	봉양 4리	제 1반	봉양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봉양 5리	제 1반	봉양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봉양 6리	제 1반	봉양 6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봉양 7리	제 1반	봉양 7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명 칭			구 역		
정선읍	봉양 8리	제 1반	봉양 8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봉양 9리	제 1반	봉양 9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봉양 10리	제 1반	봉양 10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북실 1리	제 1반	북실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북실 2리	제 1반	북실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명 칭				구 역			
정선읍	북실	3리	제 1반	북실	3리	제 1반	
	"	"	제 2반	"	"	제 2반	
	"	"	제 3반	"	"	제 3반	
	"	"	제 4반	"	"	제 4반	
	"	"	제 5반	"	"	제 5반	
	"	"	제 6반	"	"	제 6반	
	"	"	제 7반	"	"	제 7반	
	북실	4리	제 1반	북실	4리	제 1반	
	"	"	제 2반	"	"	제 2반	
	"	"	제 3반	"	"	제 3반	
	"	"	제 4반	"	"	제 4반	
	"	"	제 5반	"	"	제 5반	
	"	"	제 6반	"	"	제 6반	
	북실	5리	제 1반	북실	5리	제 1반	
	"	"	제 2반	"	"	제 2반	
	"	"	제 3반	"	"	제 3반	
	"	"	제 4반	"	"	제 4반	
	"	"	제 5반	"	"	제 5반	
	"	"	제 6반	"	"	제 6반	
	"	"	제 7반	"	"	제 7반	
	"	"	제 8반	"	"	제 8반	
	"	"	제 9반	"	"	제 9반	
	"	"	제 10반	"	"	제 10반	
	"	"	제 11반	"	"	제 11반	
	덕송	1리	제 1반	덕송	1리	제 1반	
	"	"	제 2반	"	"	제 2반	
	"	"	제 3반	"	"	제 3반	
	"	"	제 4반	"	"	제 4반	
	"	"	제 5반	"	"	제 5반	
	"	"	제 6반	"	"	제 6반	
	덕송	2리	제 1반	덕송	2리	제 1반	
	"	"	제 2반	"	"	제 2반	
	"	"	제 3반	"	"	제 3반	
	애산	1리	제 1반	애산	1리	제 1반	
	"	"	제 2반	"	"	제 2반	
	"	"	제 3반	"	"	제 3반	
	"	"	제 4반	"	"	제 4반	
	"	"	제 5반	"	"	제 5반	
	"	"	제 6반	"	"	제 6반	
	애산	2리	제 1반	애산	2리	제 1반	
	"	"	제 2반	"	"	제 2반	
	"	"	제 3반	"	"	제 3반	

명 칭			구 역		
정선읍	애산 2리	제 4반	애산 2리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애산 3리	제 1반	애산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애산 4리	제 1반	애산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애산 5리	제 1반	애산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신월 1리	제 1반	신월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신월 2리	제 1반	신월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덕 우 리	제 1반	덕 우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여 탄 리	제 1반	여 탄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명 칭				구 역			
정선읍	회동 1리	제 1반		회동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회동 2리	제 1반		회동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용탄 1리	제 1반		용탄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용탄 2리	제 1반		용탄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용탄 3리	제 1반		용탄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광하 1리	제 1반		광하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광하 2리	제 1반		광하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명 칭			구 역		
정선읍	광하 2리	제 4반	광하 2리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굴 암 리	제 1반	굴 암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가 수 리	제 1반	가 수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고한읍	고한 1리	제 1반	고한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고한 2리	제 1반	고한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고한 3리	제 1반	고한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고한 4리	제 1반	고한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고한 5리	제 1반	고한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명 칭				구 역	
고한읍	고한 5리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고한 6리	제 1반	고한 6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고한 7리	제 1반	고한 7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고한 8리	제 1반	고한 8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고한 9리	제 1반	고한 9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고한 10리	제 1반	고한 10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명 칭				구 역			
고한읍	고한	11리	제 1반	고한	1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고한	12리	제 1반	고한	1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고한	13리	제 1반	고한	1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고한	14리	제 1반	고한	1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고한	15리	제 1반	고한	1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고한	16리	제 1반	고한	16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고한	17리	제 1반	고한	17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명 칭			구 역	
고한읍	고한 17리	제 4반	고한17리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고한 18리	제 1반	고한18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고한 19리	제 1반	고한19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고한 20리	제 1반	고한20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사북읍	직전리	제 1반	직전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사북 1리	제 1반	사북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종전	" 제 3반, 제 10반
	"	제 4반	"	제 4반

명 칭			구 역		
사북읍	사북 1리	제 5반	사북 1리 제 5반		
	"	제 6반	종전	"	제 14반(대림아파트 가동)
	"	제 7반	종전	"	제 15반(대림아파트 나동)
	"	제 8반	종전	"	제 13반(하이랜드빌리지 5동)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종전	"	제 12반(영동아파트 3동~4동)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삭제)		"	제 12반(삭제)
	"	제 13반(삭제)		"	제 13반(삭제)
	"	제 14반(삭제)		"	제 14반(삭제)
	"	제 15반(삭제)		"	제 15반(삭제)
	사북 2리	제 1반	종전	사북 2리	제 1반(정선군임대아파트가동101호~505호)
	"	제 2반	종전	"	제 2반(정선군임대아파트나동101호~505호)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		"	제 12반
	"	제 13반		"	제 13반
	"	제 14반		"	제 14반
	"	제 15반		"	제 15반
	"	제 16반(신설)	종전	"	제 1반(정선군임대아파트가동106호~510호)
	"	제 17반(신설)	종전	"	제 2반(정선군임대아파트나동106호~510호)
사북 3리	제 1반		사북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명 칭			구 역		
사북읍	사북 4리	제 1반	사북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사북 5리	제 1반	사북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	"	제 12반	
	"	제 13반	"	제 13반	
	"	제 14반	"	제 14반	
	"	제 15반	"	제 15반	
	"	제 16반	"	제 16반	
	"	제 17반	"	제 17반	
	"	제 18반 ^(신설)	종전 사북11리	제1반-제21반	
	사북 6리	제 1반	사북 6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사북 7리	제 1반	사북 7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명 칭			구 역	
사북읍	사북 7리	제 7반	사북 7리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신설)	종전 사북12리 제1반-제7반	
	사북 8리	제 1반	사북 8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사북 9리	제 1반	사북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	"	제 12반
	사북 10리	제 1반	사북10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명 칭		구 역	
사북읍	사북 11리 제 1반(신설)	종전 사북1리 제 6반	
	" 제 2반(신설)	종전 " 제 7반	
	" 제 3반(신설)	종전 " 제 8반	
	" 제 4반(삭제)	" 제 4반(삭제)	
	" 제 5반(삭제)	" 제 5반(삭제)	
	" 제 6반(삭제)	" 제 6반(삭제)	
	" 제 7반(삭제)	" 제 7반(삭제)	
	" 제 8반(삭제)	" 제 8반(삭제)	
	" 제 9반(삭제)	" 제 9반(삭제)	
	" 제 10반(삭제)	" 제 10반(삭제)	
	" 제 11반(삭제)	" 제 11반(삭제)	
	" 제 12반(삭제)	" 제 12반(삭제)	
	" 제 13반(삭제)	" 제 13반(삭제)	
	" 제 14반(삭제)	" 제 14반(삭제)	
	" 제 15반(삭제)	" 제 15반(삭제)	
	" 제 16반(삭제)	" 제 16반(삭제)	
	" 제 17반(삭제)	" 제 17반(삭제)	
	" 제 18반(삭제)	" 제 18반(삭제)	
	" 제 19반(삭제)	" 제 19반(삭제)	
	" 제 20반(삭제)	" 제 20반(삭제)	
	" 제 21반(삭제)	" 제 21반(삭제)	
사북 12리	제 1반(신설)	종전 사북1리 제5반구역	(정선산수빌임대아파트101동201호~1503호)
	" 제 2반(신설)	종전 " 제5반구역	(정선산수빌임대아파트102동201호~1004호)
	" 제 3반(신설)	종전 " 제5반구역	(정선산수빌임대아파트103동101호~1403호)
	" 제 4반(신설)	종전 " 제5반구역	(정선산수빌임대아파트105동101호~902호)
	" 제 5반(신설)	종전 " 제5반구역	(정선산수빌임대아파트106동201호~1502호)
	" 제 6반(삭제)	" 제 6반(삭제)	
	" 제 7반(삭제)	" 제 7반(삭제)	

명 칭			구 역		
신동읍	예미 1리	제 1반	예미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예미 2리	제 1반	예미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예미 3리	제 1반	예미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예미 4리	제 1반	예미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예미 5리	제 1반	예미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예미 6리	제 1반	예미 6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명 칭			구 역		
신동읍	예미 7리	제 1반	예미 7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천 포 리	제 1반	천 포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조동 1리	제 1반	조동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조동 2리	제 1반	조동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조동 3리	제 1반	조동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조동 4리	제 1반	조동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조동 5리	제 1반	조동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명 칭			구 역		
신동읍	조동 6리	제 1반	조동 6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조동 7리	제 1반	조동 7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조동 8리	제 1반	조동 8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조동 9리	제 1반	조동 9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방제 1리	제 1반	방제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방제 2리	제 1반	방제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명 칭			구 역		
신동읍	가 사 리	제 1반	가 사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고성 1리	제 1반	고성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고성 2리	제 1반	고성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덕 천 리	제 1반	덕 천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운치 1리	제 1반	운치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운치 2리	제 1반	운치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운치 3리	제 1반	운치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화암면	화암 1리	제 1반	화암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명 칭			구 역		
화암면	화암 1리	제 5반	화암 1리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화암 2리	제 1반	화암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화암 3리	제 1반	화암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화암 4리	제 1반	화암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석곡 1리	제 1반	석곡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석곡 2리	제 1반	석곡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북 동 리	제 1반	북 동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몰운 1리	제 1반	몰운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몰운 2리	제 1반	몰운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건 천 리	제 1반	건 천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호 촌 리	제 1반	호 촌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명 칭			구 역		
화암면	호 촌 리	제 3반	호 촌 리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백전 1리	제 1반	백전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백전 2리	제 1반	백전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남 면	문곡 1리	제 1반	문곡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문곡 2리	제 1반	문곡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문곡 3리	제 1반	문곡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무릉 1리	제 1반	무릉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무릉 2리	제 1반	무릉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명 칭			구 역		
남 면	무릉 2리	제 3반	무릉 2리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무릉 3리	제 1반	무릉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무릉 4리	제 1반	무릉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무릉 5리	제 1반	무릉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유평 1리	제 1반	유평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유평 2리	제 1반	유평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명 칭			구 역		
남 면	낙동 1리	제 1반	낙동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낙동 2리	제 1반	낙동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낙동 3리	제 1반	낙동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광덕 1리	제 1반	광덕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광덕 2리	제 1반	광덕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여량면	여량 1리	제 1반	여량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여량 2리	제 1반	여량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여량 3리	제 1반	여량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여량 4리	제 1반	여량 4리	제 1반	

명 칭			구 역		
여량면	여량 4리	제 2반	여량 4리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여량 5리	제 1반	여량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유천 1리	제 1반	유천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유천 2리	제 1반	유천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유천 3리	제 1반	유천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구절 1리	제 1반	구절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구절 2리	제 1반	구절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구절 3리	제 1반	구절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명 칭			구 역		
여량면	구절 3리	제 3반	구절 3리	제 3반	
	고 양 리	제 1반	고 양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남 곡 리	제 1반	남 곡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봉 정 리	제 1반	봉 정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북평면	장열 1리	제 1반	장열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장열 2리	제 1반	장열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북평 1리	제 1반	북평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북평 2리	제 1반	북평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북평 3리	제 1반	북평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명 칭			구 역		
북평면	북평 3리	제 5반	북평 3리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북평 4리	제 1반	북평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북평 5리	제 1반	북평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북평 6리	제 1반	북평 6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남평 1리	제 1반	남평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남평 2리	제 1반	남평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문 곡 리	제 1반	문 곡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나전 1리	제 1반	나전 1리	제 1반	

명 칭			구 역		
북평면	나전 1리	제 2반	나전 1리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나전 2리	제 1반	나전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숙 암 리	제 1반	숙 암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가 목 리	제 1반	가 목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임계면	도전 1리	제 1반	도전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도전 2리	제 1반	도전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직원 1리	제 1반	직원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직원 2리	제 1반	직원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임계 1리	제 1반	임계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임계 2리	제 1반	임계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임계 3리	제 1반	임계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종전	"	제 3반, 제 4반
	"	제 4반(삭제)		"	제 4반(삭제)
	임계 4리	제 1반	임계 4리	제 1반	

명 칭			구 역		
임계면	임계	4리 제 2반	임계	4리 제 2반	
	송계	1리 제 1반	송계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송계	2리 제 1반	송계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송계	3리 제 1반	송계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송계	4리 제 1반	송계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송계	5리 제 1반	송계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송계	6리 제 1반	송계	6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송계	7리 제 1반	송계	7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송계	8리 제 1반	송계	8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봉산	1리 제 1반	봉산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명 칭			구 역		
임계면	봉산 2리	제 1반	봉산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봉산 3리	제 1반	봉산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낙천 1리	제 1반	낙천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낙천 2리	제 1반	낙천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낙천 3리	제 1반	낙천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용산 1리	제 1반	용산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용산 2리	제 1반	용산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문래 1리	제 1반	문래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문래 2리	제 1반	문래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문래 3리	제 1반	문래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덕 암 리	제 1반	덕 암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명 칭			구 역		
임계면	고 양 리	제 1반	고 양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반천 1리	제 1반	반천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반천 2리	제 1반	반천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개 정 이 유

-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리 조정으로 반 신설 및 조정과 행정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인구 격감지역의 반 통·폐합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선군 반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정총괄

구 분	현 재	조정내용				증.감	조정 후	비고
		신설	통합	분할	폐지			
합 계	980	12	-1	0	-32	-21	959	
정선읍	231						231	
고한읍	113						113	
사북읍	139	12			32	-20	119	
신동읍	130						130	
화암면	49						49	
남 면	82						82	
여량면	65						65	
북평면	64						64	
임계면	107		-1			-1	106	

- 반 조정내역(별표)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 3. 12.

정선군 규칙 제1209호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

개정(1999. 10. 16 규칙 제96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의 신고)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업개시일 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중 신고내용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음식물쓰레기 발생량등의 기록등)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는 음식물쓰레기발생량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 등을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 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배출확인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해당 읍·면장은 수거시마다 계량하여 음식물쓰레기배출자로부터 배출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매월말을 기준으로 배출확인서를 집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는 정선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5L단위로 올림계산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의견청취 등)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 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처분통지서(별지 제8호서식)와 납부고지서(별지 제9호서식)를 발부 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 납부독촉장(별지 제10호서식)을 발 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 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 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 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 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조(과태료 수납부의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과태료수납부(별지 제14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배출확인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 지 이 유

-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정선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 되었기에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 폐지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 3. 12.

정선군 규칙 제1210호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위원)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군수가 임명·위촉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회의 결과보고 등 서식) ① 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심의 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산사태취약지역지정 대상지별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심의 안건 제안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위 축 장

○○○○○○ ○○○○○○○○ 직위
○ ○ ○

귀하를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의하여 정선
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00.00~0000.00.00까지 0년간)

0000년 00월 00일

정 선 군 수 ○ ○ ○

※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은 문서로 갈음(임명장 수여 제외)

■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표지

○○○○년 ○○월 ○○일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보고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

■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내용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년 ○○월 ○○일(○요일) 00:00~00:00

☐ 장 소 :

☐ 참석인원 : ○명

* 참석위원 명단 작성

☐ 심의안건별 심의결과

안건번호	소 재 지			지정대 상면적 (㎡)	심 의 결 과				비고
	읍·면	리	지번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심의 보류	부결	

2. 세부 심의결과(원안가결 제외)

☐ 조건부 의결 : ○○건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조건내용 :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조건내용 :

☐ 심의 보류 : ○○건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 부 결 : ○○건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부결사유 :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3. 금후조치계획

- o 원안의결개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 공고 및 산주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월○일까지)
- o 조건부의결 개소의 조건충족 조치 및 심의보류 개소에 대한 보완 등 조치(○월○일까지)
- o 이의신청 처리 및 확정개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월○일까지)

■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표지

○○○○년 ○○월 ○○일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의결서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내용

의 결 서

제○차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심 의 번 호	심 의 안 건	의 결 사 항
제○○○○-○○호	○○읍·면 ○○리 ○○번지(지목 :) ○,○○○㎡	

※ 의결사항은 원안의결(지정),조건부(조건부 지정), 보류, 지정제외(부결) 등 4개 중 하나 기재

○○○○년 ○○월 ○○일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 원 장 ○ ○ ○ (서명)

부위원장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별 심의결과

1. 심의 번호 : 제○○○○-○호

2. 심의 대상지

- (1) 소 재 지 : ○○읍·면 ○○리 산○○번지(지목 :)
 (2) 지정 면적 : ○○○m²
 (3) 피해 유형 : 산사태·토석류
 (4) 위험 등급 : I, II, III, IV등급
 (5) 피해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3. 심의 결과

심 의 항 목	심 의 결 과		
	적 정	보 완	부적정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5)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4. 심의위원 의견

■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표지

심 의 번 호	제 〇〇〇〇 - 〇호	의 결 사 항
심 의 년 월 일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제〇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정선군 〇〇읍면 〇〇리 산〇〇번지 등 〇〇개소)

제 안 자	정 선 군 수
제출년월일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내용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자료 총괄표

심 의 번 호	심 의 안 건	의결주문
제○○○○-○○호	○○읍·면 ○○리 ○○번지(지목 :) ○,○○○㎡	원안의결
계	○○건, ○○필지, ○,○○○㎡	

■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내용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별 심의자료

1. 심의 번호 : 제○○○○-○호

2. 의결 주문 : 원안의결

3. 심의 대상지

(1) 소재지 : ○○읍·면 ○○리 산○○번지(지목 :)

(2) 지정 면적 : ○○○m²

(3) 피해 유형 : 산사태·토석류

(4) 위험 등급 : I, II, III, IV등급

(5) 피해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6) 대상지 조사결과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사유 산사태 토석류로부터 재해우려가 있는 구역 및 주요 피해예상 내용 등을 작성

－ 산지의 지형, 지질적 특성, 주변 환경, 계류의 잠재이동 토석류, 과거 피해이력 등 산사태 유발 인자와 구조적 취약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 지역 설명회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에 대한 동의 및 반대의견 여부 등

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 실시사항

○ 현장 점검계획, 지역주민 비상연락체계, 위험경보별 전달체계, 대피장소, 교육실행 내용 등을 작성

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방 공법의 적정성

○ 예방사업의 시급성 여부, 예방사업 공법 적용 사유 등을 작성

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사유 등

○ 구역면적 설정을 어떻게 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를 작성

4. 검토 종합의견

○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기재

5. 참고사항 :

- 붙임 1. 토석류 및 산사태 취약지역 판정표 및 판정등급 기준 1부 1부.
2. 지역주민의 의견, 홍보 및 교육 관련 내용 1부.
3. 예방공법 전문가 자문 내용(필요시) 1부. 끝.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

일 반 정 보	조 사 자	소속		직		연락처	
				성명			
	조사일자		2012년 월 일				
	위 치	행정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GPS좌표	위도(° ' "), 경도(° ' ")				
	○유역면적		ha				
인 자	Category 별 점수						
	1	2	3	4	5	점 수	
보호대상	일반산지	재산피해	인가 ~ 5미만	인가 5 ~ 10	인가 10 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	0	150	300	330	360		
황폐 발생원	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	산사태 위험지 2등급 50% 이하인 유역	산사태 위험지 2등급 50% 이상인 유역	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점 수	0	80	96	112			
계류내 전석 분포 비율(%)	10% 미만	10 ~ 20	20 ~ 30	30 이상			
점 수	0	10	40	18			
계류 상부 경사(°)	9 미만	9 ~ 13	14 ~ 18	19 이상			
점 수	0	10	28	54			
총 계류 길이(m)	200 미만	200 ~ 500	500 이상				
점 수	0	28	74				
계류평균 경사(°)	5 미만	5 ~ 7	8 ~ 10	11 ~ 16	16 이상		
점 수	0	16	32	48	60		
조사자의 점수보정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	점						
종합의견							
관리방안	사방댐()개소, 계류보전()km			대피장소			

토 석 류 취 약 지 역 위 치 도

토 석 류 취 약 지 역 사 진

산사태 취약지역 판정표

일 반 정 보	조 사 자	소 속		직		연락처	
				성명			
	조사일자		2012년 월 일				
	위 치	행정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GPS좌표	위도(° ' ") , 경도(° ' ")				
	○유역면적		ha				
인 자	Category 별 점수						
	1	2	3	4	5	점 수	
보호대상	일반산지	재산피해	인가 1~5미만	인가 5 ~ 10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	0	100	200	220	240		
경사길이 (m)	50이하	51-100	101-200	201이상			
점 수	0	19	36	74			
모 암	퇴적암 (이암,혈암, 석회암 사암등)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	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	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 수	0	5	12	19	56		
경사위치	0-4/10	5-6/10	7-10/10				
점 수	0	9	26				
임 상	·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무입목지	·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점 수	18	26	0				
사면형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복합사면			
점 수	0	5	12	23			
토심(cm)	20이하	20-100	101이상				
점 수	0	7	21				
경사도(°)	25이하	26-40	41이상				
점 수	16	9	0				
조사자의 점수보정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	점						
종합의견							
관리방안	산지사방()ha			대피장소			

산 사 태 취 약 지 역 위 치 도

산 사 태 취 약 지 역 사 진

산사태 및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판정 기준

산 사 태 취 약 지 역 등 급	점 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36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240~36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80~24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	80점 이하

토 석 류 취 약 지 역 등 급	점 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54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360~54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120~36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	120점 이하

제 정 이 유

-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인원 및 위촉방법을 정함(제2조)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결과 및 심의 의결서, 심의 제안서 등 회의에 필요한 각종 서식 등을 정함(제3조)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 3. 12.

정선군 규칙 제1211호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품권의 종류)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정선아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1천원권, 5천원권과 1만원권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판매대행점 지정 관리)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대행판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판매대행점이 판매를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 판매, 회수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대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판매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품권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대행점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가맹점지정 관리) ① 상품권사용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가맹점지정 신청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지정 신청을 한 자가 가맹점지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으로 지정 받은 자가 가맹점지정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가맹점지정 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품권 이용자가 물품대금으로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상품권임을 이유로 다른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2. 상품권 이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상품권 소지자가 가맹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4. 가맹점지정 시 군수와의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이 규칙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의 대금을 청구한 경우 상품권 가맹점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맹점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6개월 이내 가맹점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상품권이용 활성화 지원) 군수는 상품권을 구입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가 희망할 경우 1인당 월50만원 이내의 구입금액에 대하여 3%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하고, 5,000원 단위로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대행판매 계약서

제1조(총칙) 정선아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정선군을 “갑”이라 하고, “갑” 으로부터 상품권 판매를 대행받아 소비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는 판매처 대표를 “을”이라 칭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정선군이 발행한 “정선아리랑상품권”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발행 및 판매)

1. 상품권은 “갑”이 발행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상품권을 인도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제4조(판매금액) 상품권의 판매금액은 1,000원권은 1,000원, 5,000원권은 5,000원, 10,000원권은 10,000원으로 한다.

제5조(운영상황 제출) “을”은 상품권의 판매, 회수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상품권 운영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대금결제)

1. “갑”은 “을”에게 무상으로 상품권을 위탁한다.
2. “을”은 개월 단위로 상품권의 판매금액과 회수금액의 차액을 정산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상품권의 관리책임) “을”이 위탁받은 상품권을 도난, 분실, 화재, 기타 사유 등으로 분실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상품권의 발행금액을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중도해지와 책임) ① “갑”은 “을”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중도해지 된 경우 발생한 손해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효력발생시기 및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갑”이 승

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갑” 또는 “을”이 계약해지 만료일부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기타사항)

1.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 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하여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상품권 발행자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기관명 : 정 선 군

대표자 : 정 선 군 수 (인)

(을) 상품권 대행판매자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2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운영실적

○ 상품권 판매실적

구 분	인수량(매)			판매량(매)			잔 량(매)		
	1,000 원권	5,000 원권	10,000 원권	1,000 원권	5,000 원권	10,000 원권	1,000 원권	5,000 원권	10,000 원권
월 계									
누 계									

○ 상품권 회수실적

구 분	회수량(매)			비 고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월 계				
누 계				

20 년 월 정선아리랑상품권 운영실적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 ○ 장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지정 신청서

신청인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영업장소재지			

위와 같이 정선아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분증 사본 3. 시장상인회장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의 경우)
------	---

【별지 제4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계약서

제1조(총칙) 정선아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정선군을 “갑”이라 하고, 상품권을 소지한 자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가맹점 업소 대표를 “을”이라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정선군이 발행한 정선아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으로, 1,000원권, 5,000원, 10,000원권 3종류로 한다.

제3조(상품권의 취급)

1. “을”은 “갑”이 발행한 상품권 취급 시 이상유무(위조·변조 등)를 확인한 후 물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을”은 소비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이용한 후 나머지의 잔액을 현금으로 요구할 때에는 환불조치 하여야 한다.
3. “을”은 상품권 취급상 발생하는 분쟁이나 민원에 대하여는 “갑”의 중재안에 따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4. “을”은 상품권 소지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여야 한다.
5. “을”은 상품권 이용자가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상품권 취급 제한)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변조 등 “갑”이 발행한 상품권이라 볼 수 없는 상품권
2. 상품권으로서의 판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외관상 훼손된 상품권

제5조(배상책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대금의 결제)

1. “을”은 “갑”에게 상품권 회수대금을 수시로 지급요청할 수 있다.
2. “갑”은 “을”로부터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갑”과 “을”의 상품권 회수대금의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을”은 관내 소재 금융기관

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상품권 분실 등) “을”이 회수한 상품권을 도난, 분실, 화재, 기타 사유 등으로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상품권 취급 지정의 지위승계 등)

1. “을”은 상품권에 관하여 “갑”이 소유한 일체의 권리 및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저당 등의 담보로 제공, 이용할 수 없다.
2. 취급업소의 변경(상호, 명칭, 업주 등)이 있을 때에는 “갑”과의 재계약 체결 후 “갑”이 발행한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제9조(상품권 취급 가맹점 표시) “을”은 상품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상품권 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중도해지와 책임) ① “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의 계약을 즉시 중도해지 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을”이 본 계약당시의 영업행위와 상이한 업종 변경이 발생한 경우
- ② “을”이 계약을 중도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해지로 발생된 모든 손해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계약내용변경 등) “갑”은 본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14일 전에 “을”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을”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 시행한다.

제12조(효력발생시기 및 계약기간 등)

1.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상호 기명날인한 후 “갑”이 승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계약에 있어 “갑”과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을 시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본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한다.

제13조(기타)

1.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상품권 발행자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기관명 : 정 선 군

대표자 : 정 선 군 수 (인)

(을) 상품권 가맹점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서

상 호

전 화 번 호

영업장소재지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귀 업소를 정선아리랑상품권 취급 가맹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별지 제6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지정 철회신청서

신청인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영업장소재지			

위와 같이 정선아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지정을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서
------	---------------------

제 정 이 유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상품권의 종류는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할 수 있도록 함(제2조)
- 상품권을 판매하는 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상품권 사용 가맹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가맹점이 규칙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당 월 50만원의 범위내에서 구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하여 해당금액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6조)